딥페이크 성폭력 사태 관련
한국교회
긴급 토론회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고, 인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긴급하게 지혜를 모으려 합니다.

대상 : 관심 있는 모든 이, 관련 위원회 위원
교단 실무자, 관련 활동가 등

2024년
9월 19일(목)
오후 3시-5시
한국기독교회관 701호
ZOOM 병행

순서

사회 이명화 센터장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인사 김종생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발제 1 기독교의 관점에서 바라본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최순양 박사(이화여대)

발제 2 현행 성폭력처벌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전수연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나눔과 제언 교계 활동을 통한 한국교회 제언
최수산나 국장(한국YWCA연합회), 이은재 팀장(기독교반성폭력센터)
이성철 간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토론 한국교회의 책임있는 역할에 대한 고찰 전체 참여자

공동주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 관련 한국교회 긴급토론회”

일 정 표

시 간	순 서	
15:00-15:05	**인사 및 소개** 사회: 이명화 센터장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인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	p.3
15:05-15:30	**발제1: 기독교 관점에서 바라본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최순양 박사 (이화여대)	p.4
15:30-15:55	**발제2: 현행 성폭력처벌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전수연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p.9
15:55-16:20	**나눔과 제언: 교계 활동을 통한 한국교회 제언** 최수산나 국장 (한국YWCA연합회) 이은재 팀 장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이성철 간 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p.21 p.24 p.35
16:20-17:00	**토론 및 촬영/ 폐회** 홍보실 협력	

인 사

김종생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저는 연일 뉴스와 매체를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를 접하고 무거운 마음과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언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회복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5년 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입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정교한 기술을 덧입고 성착취 범죄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이번 딥페이크 성착취 피해는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해 대학생, 직장인, 여성군인 등 다양한 층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생, 누나, 엄마, 사촌 등 친족 간의 피해도 계속 확인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일탈적인 남성 몇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성을 착취, 소비하는 저급한 성인식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뿌리 깊게 자리한 젠더폭력과 성을 사고팔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성 산업이 인권 유린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성인권교육예산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작년, 5억 5천 6백만원의 예산도 현장 교육가들이 한참 부족하다고 했는데, 올해에는 0원이 된 것입니다. 이 교육비는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폭력, 성차별 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비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 기본적인 교육권도 보장되지 못한 채 해를 마감하게 된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교육현장을 고발하는 교사와 활동가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문득 한국교회 내 성평등, 성인식교육, 성인권교육의 현주소는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각 교단에 성인지 관련 예산이 공식적으로 책정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졌고요. 이번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로 교회 내 가해,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도 할 수 없을텐데, 직접 성도들을 마주하면서 응답해야 하는 교회들과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 여성위는 교회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전문소위원회를 2015년에 구성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성폭력피해자와의 간담회, 교회성폭력 문제 회원교단 정책 간담회 등을 개최하거나 교회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고, 한국교회여남평등주간 자료집, 교회성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리플렛, 「교회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매뉴얼 그리고 자료집」 등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회원교회 지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단의 법, 정책, 교육과정에 관해 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기독교반성폭력센터와 함께 「교회성폭력예방교육 커리큘럼」, 「교회성폭력 예방교육 강의매뉴얼」 발간하였고, 올해에는 예방교육 강의를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회원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바쁜 기간이지만 교단의 책임 있는 지도자, 성인권교육 전문가들, 활동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예방법과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긴급토론회를 위해 애써줄 전문가들과 발표자들, 참가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평등한 관계를 맺게 하는 다양한 대화와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책임 있게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요청합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회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발제1. 기독교의 관점에서 바라본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최순양 박사 (이화여대)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단어인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뜻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이미지가 아닌 경우가 더 많다. 딥페이크는 처음에는 유명인들의 가짜 인터뷰나 영화 속 캐릭터를 재구성하기 위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나, 점차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유포, 정치적 선동, 범죄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딥페이크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중이 이러한 정보를 진짜로 믿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경찰에 체포되는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이미지나 '퍼퍼 재킷을 입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미지는 대표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로 널리 유포되기도 했다.[1] 이 경우, 특별히 트럼프나 교황이 심각하게 착취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딥페이크 기술은 2017년경부터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AI 알고리즘이 데이터 분석과 학습 능력을 통해 점점 더 정교한 합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온라인에서 딥페이크 소프트웨어를 접할 수 있게 되어 누구나 간단하게 가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딥페이크 기술은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광고 영상을 촬영할 때, 똑같은 모델이 다른 장소와 시간에서 직접 촬영하는 것보다 비용을 덜 들여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모델의 다른 광고를 촬영할 수 있다. 교육의 측면에서도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램브란트 같은 유명한 화가가 그의 미술작품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영상을 제공한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는 것 같은 현장감과 감동을 전하는 매우 효과적인 교육의 매체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데, 딥페이크 영상이 특정 기업의 직원, 혹은 제품과 관련된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기업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 차원에서는 이미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타 기업의 평판을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많은 국가가 딥페이크에 대한 정책과 법률을 검토하는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발 빠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5월,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써 'AI 생성물'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울러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대응은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대응 가능한 방법이지만, 이미지합성기술 피해자가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개인인 경우, 어떻게 이를 방지하고 보호할지에 대해 전혀 대응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글을 통해서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이나 범죄 방지용 대응을 논하지는 않을 것이다.

개개인을 보호하고 악용을 방지하는 규제나 법률적 제재를 만들어 내는 것도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

1) 딥페이크란 무엇이고,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최성철, 2024.9.09. SAMSUMG SDS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의 인식을 개선하고 의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네스코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적 합의인 「인공지능 윤리 권고(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I)」를 채택하였다. 그 이후로 3년 여년 동안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 곳곳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스며들었다. AI 기술이 주는 혜택도 무수히 많이 누리고 있으나 세밀하고 튼튼한 안전망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의 정보를 빼돌리고 누군가를 착취하는 데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인공지능을 충분히 활용하되,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마저 대신하게 두지는 말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 말은 인공지능이 ‘선’을 넘게 하지는 말라는 뜻으로, 인공지능에게 가치 판단의 영역까지 맡겨서는 안된다는 경고의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는 사실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고 퍼트리고 이용하는 ‘사람’을 향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윤리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윤리이자 책임성이다.

포스트휴먼시대가 도래하면서 마치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하고 인간의 자리를 빼앗을 것처럼 우려하고 두려워하지만 정작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인간이 어떤 가치관을 따르고 있느냐에 깊게 의존한다. 예를 들어 챗GPT 기능에서 인공지능은 남녀를 고정된 틀 안에서 묘사하거나, 소수자와 인종을 차별하는 표현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챗GPT의 데이터 형성 과정에서 성 고정관념이나 인종차별적 시각이 입력되었기 때문이다. 개발자와 소비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어떤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대하는가에 따라 인공지능은 득이 될 수도 있고, 실(해)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딥페이크 기술 또한 그 책임성은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인간을 넘어 ‘포스트휴먼시대’(탈인간)가 도래한다고 해도 결국 인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면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한 인간이 되어야만 포스트휴먼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인간이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불평등의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면서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포스트휴먼시대를 겪어내는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할 수 있다.

딥 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좋은 사례들과 그 악용을 겪어내는 요즘에도 더욱더 다시 돌아와 인간은 어느 정도로 성숙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인간이 타인을 어떻게 존중하고 대해야 하는 문제뿐 아니라 여태껏 인간보다 열등하다고 인간보다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 존재들과도 살아야 하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인간은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성과 생활에도 성숙해 있지 못하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AI'에서 인간이 자신의 자녀가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자, 그 아이를 대체할 인공지능 아이를 만들지만(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감정까지 느끼는 존재를 소유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진짜 아이가 돌아오자, 그 인공지능 자녀를 잔인하게 버리고 심한 상처를 주게 된다는 이야기가 묘사된다. 결국, 인공지능 아이는 다른 버려진 기계 인간들과 떠돌고 쫓기다가 단지 강철 덩어리로 그들을 대하는 인간들에 의해 뜨거운 불에 화형당하면서 녹아 사라지는 현장에까지 가게 된다. 거기에서 나레이션으로 표현되는 목소리는 묻는다. 인간이 같은 인간을 죽이고 고문하고 잔인하게 대하던 그 폭력성이 사라지지 않고 이제는 다른 비인간 존재에게까지 더욱 증폭되어 행해지고 있다고.

이러한 포스트휴먼시대를 맞이하는 인간의 책임성과 관점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존중과 관계성을 말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의 질문을 무겁게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가치관 교육을 어느 범위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 할 것인 지의 문제는 불가능성과 가능성의 갈림길에 서 있는 듯하다. 적어도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다루어 온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퇴보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절망스럽게 자리 잡는다.

인터넷 세상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성착취적 사건은 통상 '사이버 포르노그래피'라고 불러왔다. 포르노를 정의 내리는 범위에 속하는 항목 중에 1) 여성이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성적 대상이나 상품으로 묘사된 경우 2) 여성의 신체가 부분화되어 그 부분으로 여성이 축소된 경우에 이는 포르노그래피로 간주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음란 영상물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디지털화된 영상으로 파급되고 있다면 이는 사이버 포르노그래피라고 볼 수 있다.[2] 사이버 포르노그래피의 문제점은 하이퍼 실재의 세계로 들어가 사실과 실재에 대한 판명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성착취의 문제점은 위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에 정확히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사이버 포르노그래피의 문제점은 여성의 신체나 성행위를 착취적으로 영상에 담아서 유포한다는 것이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혹은 당사자의 신체가 아닌 영상을 조작해서 성착취의 대상으로 뒤바꾸어 놓는다는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나의 욕망과 쾌락을 만족시켜야 하는가? '나'는 일시적으로 쾌락을 느끼겠으나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엄청난 고통을 줌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의 문제가 주로 청소년이나 20대들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면서 이 사건들이 청소년 교육의 문제인지, 아니면 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문제인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독교적 글을 찾아보게 되면서 기독교는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책임성과 윤리의식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송용섭 교수는 "도구라는 것은 가치중립적인데,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좋거나 나쁘게 사용된다"며 "교회학교에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 이전에 선행될 것은 성품 교육이라고 본다. 아이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대할 때 즐거움이나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행동이 가족과 주변과 공동체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책임적인 주체라는 인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또한 책임 주체로 성장하면서 말이나 도구의 사용 결과가 나와 이웃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교육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3]

물론 이러한 인간에 대한 자라나는 세대에게 책임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과 운동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가 과연 '인간 일반'의 문제인가? 라는 질문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책임 의식과 성품을 교육해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자라나는 세대의 '성의식'은 건강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 더욱 성숙해지기 어렵고 더 퇴보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이야말로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다. 교회가 앞장서서 '관계적 성'(서로를 존중하면서 행해지는 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특별히 딥페이크 기술 관련 사건들은 전반적인 청소년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기술을 통해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폭력적'으로 누리는 존재들이 있고, 그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기에 이러한 일반적 청소년

2) 양해림 외, 『사이버 공간과 윤리』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176.
3) 딥페이크' 청소년 범죄 심각, 교회학교는 안전한가? 신동하, 한국기독공보, 2024.8.29.

윤리교육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사이버 혹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하는 기독교인의 자세를 운운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 범위를 좀 더 좁혀서 접근해야 한다. 이번 딥페이크 사건들이 드러내는 우리의 민낯은 "왜 자라나는 청소년이 다른 존재를 나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성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재 학교나 여타의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성교육은 말 그대로 나와 다른 사람의 '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알리는 데 치중되어있다. 교회에서는 더더욱이 성에 대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교육하면서 '혼전순결'을 강조하는 곳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전형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인간 주체 모두가 자신의 성이 존중되고 안전하고 동등한 관계성을 통해 서로를 인식하게 하는 그러한 성교육에 대해서는 교회는 잘 시도해 보지 않았던 것 같다.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건강한 성문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동등하게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일본의 여성학자 우에노 지즈코는 그의 책에서 "욕망을 가지는 것과 욕망을 행위로 옮기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쓰고 있다.[4] 자신의 신체를 제외한 타인의 신체가 개입되는 순간 그 타인의 동의 없이 이 행위가 진행되는 순간 이 욕망은 '성범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혹은 상대방의 신체를 대상화시키거나 수단화시킴으로 나의 욕망과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이 성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인식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신체를 폭력적으로 악용하거나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동이나 비인간 존재들(식물. 곤충 등이나 기계적 타자)와 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존재들을 의사를 묻기 이전에 내 행동이 가학적인지 아닌지(폭력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매우 다르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은 '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겠구나, 꼰대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소위 인간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존재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여 보살핌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고양이 한 마리와 같이 사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인간이 아니니까'라는 생각이 많아서 내가 만지고 싶을 때 만지고, 맘에 안 드는 행동할 때는 소리 질러 말리기도 하고, 가볍게 툭 치면서 구박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딸아이는 어떤 경우에도 고양이에게 손을 사용한 폭력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드럽게 예쁘다고 만져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양이는 나와 비교해서 딸아이를 더 좋아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낀다. 그렇다고 고양이가 나를 싫어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의식주를 내가 제공하기 때문이다. 고양이는 나에게는 경계심을 많이 가지고 대하다가 내가 상태가 좋아 보일 때에 비로소 편안하게 대한다. "예쁘다, 예쁘다" 말하면서 부드럽게 대할 때 가장 좋아하는 것 같다. 우리는 모두 관계적 존재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 상대방이 나에게 영향을

4) 우에노 지즈코,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99.

준다. 더 급진적으로 보자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생각해 낸 것을 타이핑하는 것은 나이지만 나의 생각을 문자화한 것들을 기록해 주는 것은 노트북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노트북의 존재를 인식하고 감사함을 가지게 되면 아마도 노트북은 좀 더 긴 시간 동안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있을 수도 있다.

요즘처럼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인터넷이라는 가상 세계를 통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관계성'과 '관계적 성'을 알아가도록 할 수 있을까?

기독교는 어떻게 이토록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을까? 내 행동의 결과로 누군가가 고통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도록 깨어있는 감수성을 갖도록 교육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할까?

실제 생활에서 나의 영향을 받는 상대방을 경험하면서 내 행동을 곧바로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 행동이 미칠 결과를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이라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드닝이나 식물을 키우는 일, 농사를 짓는 일,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일 등등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상상력과 감수성을 체험하고 직접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식상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입시로 인해 청소년의 삶이 대부분 성적을 잘 받는 것에만 치중되어있는 현실을 또한 극복해야 한다. 타인이 실패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경쟁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갈등 또한 깊어지고 있다. 나보다 약한 존재가 나를 제치고 앞서 나가는 것이 보기 싫어 그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게 당연한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절망적이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연결망 속의 나를 발견하는 눈을 심어 주어야 한다. 나보다 약한 존재라도 너그러이 존중감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지혜를 종교 공동체를 통해서라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닮아있지만 조금씩 다른 '생각해 볼 문제들'

1. 교회가 앞장서서 '관계적 성'(서로를 존중하면서 행해지는 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구체적인 자료로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교회 공동체가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연결망 속의 나를 발견하는 눈을 심어 줄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2. 포스트휴먼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간이 더 성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현실에서 어떻게 여전히 인간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교회의 자원은 무엇일까?
3. 기독교는 어떻게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을까? 내 행동의 결과로 누군가가 고통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깨어있는 감수성을 갖도록 교육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4. 규제와 금지, 처벌 방안 등을 만드는 것 이전에 인식의 전환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까? (너무도 허황된 이야기라고 진작에 포기해야 할 문제일까?)

발제2. 현행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전수연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sooyeon.jun@apil.or.kr)

1.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 법제

현재 디지털 성폭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의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5]. 사실 디지털 성폭력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젠더 기반 폭력과 여성 혐오가 드러난 또다른 성폭력 범죄의 양태로 볼 수 있음. 또한, 전통적 개념의 성폭력과는 달리 디지털 기술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온라인 공간으로의 범죄의 영역 및 피해대상의 범위가 확장되었고, 한번 온라인에 풀린 영상물은 피해자의 안전감을 박탈하고 지속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게 하는 등 피해의 지속기간마저 연장되었음.

매일같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 소식들이 보도될 정도로 범죄는 만연하고 피해자들은 속출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 양태의 다양성과 참신성을 미처 포섭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는 존재하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본 발제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한 법규 및 해당 내용을 살피고, 해석과 판례 등을 통해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짚은 후 개선안을 제안함.

2. 디지털 성폭력 관련법 및 내용

가. 관련 법조문 정리 도표[6]

유형	관련법 조항	
	주요 내용	처벌수준
불법 촬영	성폭력처벌법[7]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 및 재유포, 영리목적의 유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3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반포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8]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 협박·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 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 - 강요: 3년 이상 유기징역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 21대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대책,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이 30여건 가까이 발의되었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그러나 이번 9월 초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중고등학교 내에서도 만연해 있는 실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만 20건이 넘었음. 법안들의 대부분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내용과 겸침. 예를 들어, 불법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은 2021년 두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음. (2024.9.4. 경향신문 “딥페이크 성범죄 온 나라 뒤흔들고 나서야 … 정치권 ‘뒷북 법안’ 우르르” 참고)

6) 2023년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현황 및 과제 정책보고서 참고

		- 직계존속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 (강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합성· 제작·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제1,2,3항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반포 등)	- 편집 등, 반포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편집물 등을 반포 등 : 7년 이하의 징역
사업자의 유통·소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청소년성보호법[9]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수출입)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아동·청소년 성착물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 5년 이상의 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물의 광고·소개·전시·상영)	- 3년 이상의 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 (아동·청소년 상착취물의 제작· 알선)	- 3년 이상의 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징역
온라인 그루밍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17조의 2 (금지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 2를 중심으로 한 법률의 내용

▶ 불법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10]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u>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u>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약칭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
10) 성폭력처벌법 제15조- 동법 제14조 미수범 처벌 규정 있음.

▶ **유포(재유포) · 판매 · 제공 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 **유포 협박 · 강요**

-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 미수범 처벌0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5.19]

▶ **소지 · 구입 · 저장**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 **합성 · 제작 ·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11] 제1-3항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 미수범 처벌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성폭력처벌법 제15조 - 동법 제14조의2 미수범 처벌 규정 있음.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시행일 2020.6.25]]
[본조신설 2020.3.24] [[시행일 2020.6.25]]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_성착취물 제작 · 배포

촬영대상자가 연나이[12]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인 경우는 촬영대상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하여 처벌함.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13]이나 표현물[14]"이 등장하여 1) 성교 행위, 2)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뜻함.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또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촬영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 에 따른 불법촬영물과 구분됨.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시행일 2023.10.1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시행일 2023.10.1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시행일 2023.10.1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시행일 2023.10.1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시행일 2023.10.1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2) 같은 연도에 출생한 사람을 같은 나이로 보기 위해 만 나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개념, 지금의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나이 계산법
13) 대법원은 이에 대해,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는 해당 성착취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뿐만 아니라, 그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참조)"고 판단한 바 있음.
14)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파일에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복장을 입은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전부를 노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표현물의 외모가 상당히 어려보이게 묘사되어 있는 경우, 이를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20노172 판결).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6.2]
[본조제목개정 2020.6.2]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_온라인 그루밍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1.3.23] [[시행일 2021.9.24]]

3.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를 중심으로 살펴본 문제점

▶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요건으로 하는 부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서 불법 촬영물, 허위영상의 편집물 및 해당 영상들의 유포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촬영물등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인지 여부를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판단하고 있음. 수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모호함도 문제이지만, 주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주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여성을 구시대적 순결 규범에 가두는 성차별적인 용어임.
- '성적 수치심'이 주요 쟁점이 되었던 일명 '레깅스 판결'에서 사건의 경위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버스 안에서 남성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알아챈 피해여성이 남성을 고소하였던 사건. 본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이슈가 되었고, 추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됨. 특히,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었음.
- **2심 무죄 선고의 주요 이유는,**

① 여성의 하체 뒷모습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가 아니다. 헐렁한 상의가 엉덩이 바로 위로 내려오고, 직접 노출된 부위는 목, 손, 발목부분이 전부임, 특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도 않았고, 이는 "통상적인 시야에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 한 것에 불과함.

② 레깅스는 요즘 여성들의 평범한 일상복이다. 피해자도 레깅스 입고 대중교통 이용하였음[15].

15)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명문] 일명 '레깅스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심지어, 이 재판부는 불법촬영된 피해자 사진을 판결문 본문에 증거로 첨부하면서 또 다른 비동의유포죄를 저지르기도 했음)

③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은 ‘화가 난 것’이지,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고 판단함.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 불쾌함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①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자유 명시

: 대법원은 먼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판례를 다시 확인하고, 이에 더해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음.

그러면서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섣불리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해자 자신이 드러낸 신체라도 의사에 반한 성적 대상화를 거부할 자유를 인정함.

원심은, 성적 대상이 되기 싫으면 그 옷을 입지 말았어야 한다거나, 그 옷을 입고 거리에 나왔으면 그 정도 시선은 감수하라는 식의 전제로 판단.

② 의사에 반하여 촬영 당하는 맥락이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

: 촬영결과물만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도 있다고 보았는데,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사에 반해 촬영 당한다는 행위로 인해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 가능성과 전파 가능성 등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지적.

③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 존재, 부끄러움이나 창피함 강요말 것

: 원심이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한 것도 지적함.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이를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협소하게 볼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런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보았음.

- 위 사건에서 보듯,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데, 그 해석에서 법원 역시 가해자 중심의 판단 가능성이 있고, 개인의 신체 촬영물이 음란물에 해당하는 때에만 규제대상으로 삼아 부적절함.

▶ 동법 제14조 불법촬영의 대상물은 ‘사람의 신체’로만 한정

- 신체가 아닌 이미지나 영상 등에 대한 촬영은 처벌 대상이 아님-〉 소지죄에도 해당안됨[16]

파기환송했다 중 발췌

16) 예를 들어, 남녀가 영상통화 중 남성의 요청에 따라 여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영상통화를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8.8.30.선고 2017도3443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조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참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관련, 유포 목적 없이 개인 소장용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부재함.**

- 비교) 아동·청소년이 피해대상인 경우-〉 제작, 반포, 구입이나 다운로드를 통한 영상물을 소지한 자는 처벌 가능
-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설령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물 등을 구입이나 다운로드하였다 해도, 실제로 반포 등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다운로드받은 딥페이크 영상을 본인의 휴대폰을 직접 지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경우) 처벌 불가함[17]. 또한, 촬영물의 대상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성적 편집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소지 행위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음. (추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미 피해는 확대되고 난 이후임)
- 동법 제15조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지만, 이는 실제 반포 등의 행위로 나갔으나 의도한 대로 유포가 되지 않거나 팔리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하므로 단순 소지행위는 미수범으로도 처벌 불가함.

▶ **성폭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범죄 구성요건이 열거방식으로 규정되어 처벌의 사각지대 발생함.**

- 성폭법 및 청소년보호법은 각각 불법촬영물, 편집물 및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유포 범죄의 행위 태양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함.

  예를 들어, 불법촬영물의 '반포 등'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하였는데, 상대방 남성이 영상 통화 중 여성의 상의탈의한 장면을 몇 차례 캡쳐한 경우는, 캡쳐의 대상물이 신체가 아니므로 불법촬영에 해당하지 않게 됨.

17) 전문가들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범죄로 수익을 거두는 구조를 깨뜨려야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거래는 가상화폐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은행 등 금융기관 시스템으로는 확인이 어렵다"며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도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의 2에 따라 반포와 판매만 처벌하도록 돼 있어 구매자를 처벌할 수 없다. 구매자들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도박에 쓰인 가상자산을 범죄 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2018년도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만하다"며 "딥페이크 범죄에 쓰인 가상자산도 충분히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몰수하기 위한 수단이나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2024.8.30.자 동아일보, '중3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177건 만들어 돈벌이')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음.

- 그렇다면, 휴대폰에 있는 딥페이크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법상 '반포 등(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데, 불법 영상물을 확산한다는 점에서 '반포 등' 행위와 본질이 같은 행위임에도 처벌할 수 없게 됨.

▶ 촬영· 편집· 유포시, '의사에 반하여' 요건의 한계

- '의사에 반하여''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거나 거부를 했다가 추단할만한 구체적 정황이 있어야 인정되지만, '동의 없이'는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 촬영 등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보다 선명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여성이 옷을 벗고 통화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통화 상대방 남성이 여성이 옷을 벗고 있는 장면만 캡쳐하였다면, 이 경우 남성의 캡쳐행위는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가. 이 경우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면 명확한 문제지만,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황적 해석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 불분명함.

▶ 촬영죄 vs 유포죄에 있어 불법성과 형벌의 불균형

- 불법촬영물 등이 온라인에 한번 유포되면 무한대로 복제, 확산이 가능할 뿐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형, 가공되어 새로운 컨텐츠로 재생산 및 유포될 가능성이 높음. 삭제지원을 하더라도 온라인에서의 완전한 삭제 또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동의 촬영보다 비동의 유포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촬영죄와 유포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두고 있어, 범죄와 형벌간 불균형 발생.

▶ 14조의 2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적용 한계

- 제14조의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는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에만 적용됨[18]. 제14조의2에는 편집 등을 거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4조의3에는 제14조의 2 '편집물' 등이 열거사항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보아, 입법 미비로 보임. 즉 현 법제상으로는 딥페이크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이 불가함[19].

▶ 불법촬영물 등 유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의 문제

-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 등 정보처리자가 개인의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법률임[20]. 따라서 개인의 정보처리 권한이 없는 일반 사인(私人)이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음. 개인 SNS 등 온라인에서 취득가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이나 불법촬영물과 같이 유포시키는 경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18) 제14조의 3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14조에 나오는 표현임.

19)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이 적용된 판례들을 확인해보니, 모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촬영죄가 문제된 사안들이었음.

20)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4. 현행 성폭력처벌법의 개선 방향 및 제안

▶ 불법촬영 및 편집물 생성 등의 요건이 되는 '성적 수치심' 용어 수정

- 해당 조문에서 가벌행위를 규정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목적 중 하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이므로, 촬영물이나 편집물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같은 감정까지 건드렸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은 "성적인"과 같은 중립적 용어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 이에 대해 2022.3.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 TF[21] 에서도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8차 권고안으로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현행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 **동의없이**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열거방식의 규정의 개정 필요성

- 촬영, 복제, 편집, 합성, 가공 등의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 대신 "생성 등" 의 포괄적 개념으로의 수정 필요성. 현재의 열거식 규정으로는 포섭하지 못하는 행위 양태들이 있고, 추후에는 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촬영 및 허위영상물 편집죄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야 함.
-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보호법 상 의사에 반한 반포·임대·판매·제공 등 행위를, 성적

21) 법무부는 2021년 7월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를 구성하였고, 전문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8개월간 성범죄 대응 법제 개선 권고안을 11차례 발표하였음. 그러나 위 TF는 윤석열 정부 출범한지 한달 만인 2022.6. 해산되었음. 〈2024.9.4. 오마이뉴스_"서진현 전 검사, '절박하다' 했는데… 윤 정부 들어서고 디지털 성범죄 TF 해산" 기사 참고〉

이미지를 ‘대상자의 동의없이 “취득·이용하거나 확산을 촉진하는 행위 등”과 같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함.

▶ 불법으로 촬영, 편집, 유포시 ‘의사에 반하여’ 요건을 ‘동의 없이’로 수정

- 성폭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허위영상물등의 반포 등, 촬영물등 이용 협박 강요의 죄에서 ‘의사에 반하여’ 요건을 ‘동의없이’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 ‘의사에 반하여’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거나 그러한 정황이 있어야 인정되지만, ‘동의없이’는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 즉, 명확한 거부 의사 없이도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법 2021.4.15.선고 2020고단1797 사건에서는,
  연인 간에 평소에도 성관계나 알몸을 촬영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문제삼았던 알몸 등 사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예가 있음.
- 또한, 다른 사건의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B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B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거나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B이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참조)고 판시한 사건도 있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를 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체적 정황상 판단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반의사’를 ‘반동의’로 수정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취지에 보다 더 부합하는 개정 방향임.

▶ 촬영죄 및 유포죄 형량 조정

-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유포 등’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 촬영물이 한 번 유포된 경우 그 확산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삭제지원을 받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 불안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촬영죄와 유포죄의 불법성이나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포죄의 형량을 촬영죄보다 높게 조정하는 것을 제안함.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편집물 및 영상[22] 등 소지죄 신설 필요성

- 허위영상물의 편집물 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 혹은 관련자가 해당 영상을 소지를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죄’로 포섭되지 못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음.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본인 신체에 대한 통제권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것. 따라서 성적 촬영물 등 성적 이미지를 ‘대상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는 행위’ 또는 ‘대상자의 삭제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신설 필요성.

---

22) 앞서 예로 들었던 바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불법촬영물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캡쳐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음. 따라서 14조 입법미비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불법성은 충분한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함.

▶ **14조의 2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 추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은 조문의 해석상 동법 제14조의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한 행위만 처벌이 가능함. 동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 편집물 등' 을 이용한 협박·강요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음.
- 또한, 아동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피해자등에 대한 강요행위'는 아동 및 청소년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임. 아동 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협박·강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음.
- 성폭력처벌법의 제14조의 2 허위영상 편집물 등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를 추가하는 개정 필요.

▶ **개인정보 악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여 유포하거나, 성적 이미지에 개인정보를 결합시켜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포하는 경우, 현 조항인 14조의3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에 행위 태양을 신설하고,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 또한, 편집물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조문 신설 필요성.

▶ **공소시효 적용의 완화**

- 현재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불법촬영물의 반포 등, 허위영상물의 편집 등,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은 공소시효가 7년임. 영리목적으로 촬영물 등 반포한 경우에는 10년. 청소년성보법상 아동성착취물의 제작 등은 15년, 영리목적으로 성착취물 판매 등은 7년임.
- 불법촬영물 제작 자체의 불법성도 크지만, 한 번 유포되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소시효의 기산점 시기가 문제될 수 있음. 형사소송법상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할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유포행위를 알게 된 날이 유포행위와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여 대상자의 피해가 감소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촬영물이나 편집물에 대한 유포죄의 공소시효를 늘리는 것을 제안함.

▶ **성매매처벌법상 위계·위력을 이용한 불법촬영 조문의 정비**

-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4호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을 성폭력처벌법으로 옮기고, 기존의 불법촬영에 위계·위력을 이용하여 촬영한 행위까지 추가하는 방향을 제안함.

5. 성폭력처벌법상 문제점과 개선안 정리표[23)]

문제되는 부분	개선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에서 촬영, 편집, 유포의 대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성적인 '의 용어로 수정할 것을 제안

23) 본 발제문 작성에 아래 자료들을 참고하였음.
: 디지털 성범죄로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개정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이흔재) /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연구 (신성원)/ 이른바 '레깅스 판결'(2019도16258)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해석의 한계 (이승준)/ 20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_기술매개 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김재현)/ 2024.9.10.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관련 긴급집담회 자료집_일상을 위협하는 사이버 생태계의 여성주의적 전환을 위하여/ 2020.7.1.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_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자료집 등

수치심'을 요하는 부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촬영물의 대상물인 '사람의 신체'로만 한정되어 있음.	-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관련, 유포 목적 없이 딥페이크 영상 등에 대한 소지죄 규정이 없음, 피해자의 불안 지속	본인이 대상화된 성적 영상물, 편집물 등을 '대상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는 행위' 또는 '대상자의 삭제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신설
범죄구성요건이 열거방식으로 규정	- 촬영, 복제, 편집, 합성 등의 행위를 '생성' 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해야 함. - 유포 및 소비 등 행위를 '취득 이용하거나 확산을 촉진하는 행위'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
촬영 편집 유포시 '의사에 반하여' 요건의 한계	- '의사에 반하여'-> '동의없이'로 변경해야 함. '의사에 반하여'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거나 그러한 정황이 있어야 인정되지만, '동의없이'는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 즉, 명확한 거부 의사 없이도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불법촬영죄 및 유포죄간 불균형	유포죄의 불법성이 더 크므로, 형량 조정해야
성폭력처벌법14조의2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14조의3에 불법촬영물 뿐 아니라 허위영상 편집물 등을 통한 협박 강요죄 신설 필요.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 편집물 유포 중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의 문제	개인정보 악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되어야 함.
공소시효의 문제	촬영물이나 편집물 등에 대한 유포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완화하거나 형량을 높여 공소시효를 늘리는 것이 필요.
성매매처벌법상 위계·위력을 이용한 불법촬영 조문의 정비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4호를 성폭력처벌법 관련 조항으로 추가하고, 기존의 불법촬영에 위계·위력을 이용한 행위도 신설하는 방향을 제안.

나눔과 제언(1)- 딥페이크 사건을 통해 보는 한국교회의 역할

최수산나 국장 (한국YWCA연합회)

1. 딥페이크는 어디로부터 나왔나?

- 여성 혐오의 산물로서, 성착취에 기반한 포르노 제작 기술임. 이를 통해 여성은 누구나 성착취의 대상이 됨.
- N번방 이후에도 여전히 지인능욕 방 등으로 성 착취의 현장이 되고 이익 창출의 창구가 되고있는 온라인 플랫폼(텔레그램)들의 책임성 여부 문제.
-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무기력화하고, N번방 이후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방관한 정부의 무책임성 및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무능함.

2.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무엇을 해왔는가?

-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자 대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음. 또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협박 등에 의해 드러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전체적인 범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직접 영상 삭제 등을 요청하는 등 피해 복구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 등에 문제가 있음. 기존 성폭력범죄조차 온전히 피해가 인정되기 어려운 한국 상황 속에서, 기술이 매개된 성적 폭력이라는 복잡한 범죄 피해를 제기하기는 더욱 쉽지 않음.
- 따라서 피해자 보호 관점으로 법령이 개정되고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와 엄정한 범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 심리치료와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

1) 법령 개정 제안 활동

〈2024 제22대 총선 한국YWCA 정책 제안〉

○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 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구성요건을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수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에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삭제 및 '생성' 개념 추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범죄행위를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성적 이미지에 해당되도록 확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 확대

: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당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나, 센터 예산 및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 피해자 회복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
-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플랫폼 규제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

: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최소 142억 원

감축한 것으로 추산되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 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 예산 전액 삭감됨.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예산 복구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매뉴얼 실효성 제고 및 시의적 방안 마련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정규 교육과정 내 의무화

▲ **외국 사례**: 캐나다의 경우, 삭제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전담 처리 기구에 신원정보 등 강력한 정보수집권한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확대하고 있음. 사후 처벌과 불처벌 사이에 조건부 또는 전적인 인터넷 등 디지털 네트워크 사용 제한 명령과 같은 새로운 내용의 보호 장치를 도입. 디지털 증거 보존을 위한 제도나 신분위장수사 등을 적극 활용. 비동의 유포에 관하여 행위 발생 이전이라도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까지 확대.

▲ **법률 개선안**: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2021.7) 조직되었고 총11차의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서지현 팀장을 타 부서 인사발령으로 해체.(2022. 5)

*참조: 법무부 홈페이지 내 법령 자료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 형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호관찰법, 정보통신망법, 형사소송법, 소송촉진법 등의 관련법 개정안

2) 기술매개젠더폭력 예방 교육 교재 개발

- '기술매개 젠더폭력'은 디지털성폭력, 온라인성폭력, 사이버성폭력으로 사용되며,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거나 디지털 기술이 매개된 성폭력을 통칭함.
- 서울경찰청은 지난 9월 6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101건을 수사 중으로 피의자 52명을 특정함. 피의자 중 10대는 39명(75%), 20대 11명(21%), 30대 2명(4%) 등으로 10대 청소년에서 피의자, 피해자 수가 가장 높음.
-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상담사례 분석'(2021)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 10명 중 9명은 '범죄'라는 인식 없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답변함. 성범죄 가해 동기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함 21% △재미나 장난 19% △호기심 19% △충동적으로 16% △남들도 하니까 따라해 보고 싶어서 10%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4% 순(중복 답변)으로 나타남.
- 다양해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목표와 내용을 위한 교육 분야에 있어서 성범죄, 성평등 등 개념의 명확한 확립, 즉 디지털 리터러시와 성폭력 교육이 필요성이 제기됨.
- 한국YWCA는 디지털 입문 연령대를 고려하여 현장의 교육 요청이 많은 초등 4,5학년을 대상으로 교재 제작 및 교육을 준비하고 있음.

· 4차시 내용: 1) 디지털 시민성과 기술 매개 젠더 폭력 2) 따돌림/괴롭힘(학교 폭력) 3) 피싱 4)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 구성: 교사용 교재 및 활동지 포함
· 제작: 제작 완료 후 교재 교육 실시, PDF 형태로 배포.

3) 기독여성주의 교육

- 기독여성단체로서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목적 하에 성서 내 시대적 편견을 드러내고 성차별을 넘어 모든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시도해옴.

- 엘리자베스 피오렌자(Elisabeth Schüssler Fiorenza)의 의심의 해석학: 의심, 비판, 해석, 창조적 상상력
- 성서를 신화적 원형'(mythical archytype)이 아닌 '역사적 모형'(historical prototype)으로 이해
- 한국YWCA 기독여성주의 교육: 2017년 기독여성주의연구모임 및 여세 책자 발간, 2018년 지역별 성평등교육 진행. 2019년 〈하나님의 형상, 여성 우리〉 7강을 YWCA아카데미(온라인)에 탑재 후 리더십 필수교육에 포함. 2020년 정책교육, 2022년 여성신학아카데미 4강 운영, 2024년 찾아가는 회원Y교육, 크리스천페미니즘 아카데미 등

3. 교회는 딥페이크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1) 혐오의 메시지 대신 성평등한 현장으로 체질 개선

- 목회데이터연구소 통계(2019)에 따르면, '혐오 표현'을 보고 들은 것을 묻는 질문에, 일반 국민에서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혐오 표현(62%)이, 개신교인 사이에서는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60%)이 가장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중, 개신교인의 교회/기독교인 모임 시 혐오 표현 접촉도는 전체의 48%이며, 접촉 경로 중 '목사/전도사'가 67%로 나타남.
- 혐오와 경멸 대신 사랑의 종교로, 배제와 독선대신 포용과 공감의 언어, 그리고 성평등한 기독교의 회복을 위한 가르침과 문화 필요.

2)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가르침과 시대에 맞는 기독교 윤리

- 주요사회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2019,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 따르면, 성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으로 '당사자끼리 사적으로 논의하고 해결'(25.5%), 공적으로 논의하고 해결(24.5%), 목회자 설교 시 성 이슈(성평등, 혼전순결, 동성애)를 다루는 정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53.5%), 가끔 다룬다(43.7%), 교회가 성 이슈에 보수적인 이유는 성서의 가르침(36.7%), 한국교회의 전반적 분위기(27.5%), 기독교의 전통적인 인식(25.5%)이고, 성서의 가르침이 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직분이 높을수록, 한국교회 분위기로 답한 비율은 일반 성도에서 높게 나타남.
- "성서에는 콜라를 먹지 말라는 말도,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라는 말도 없다", 지금 시대에 맞는 기독교 윤리의 대원칙은?

3) 교단 외 기관 교육 자료들의 활용

- 성평등, 사회적 정의, 기후, 평화(통일) 등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을 구성하는 기독교 교육 교재 구성
- 에큐메니컬 기관 및 연구 자료 및 교육 자료의 활용, 관련 특강 등 예)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라라스쿨, 여신협 기독교여성상담소, 지역YWCA 여성상담소 등

이은재 팀장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

- 지인(친구, 선생님, 엄마, 누나, 동생, 사촌)을 대상으로 ai를 이용하여 얼굴과 나체사진, 성관계 영상 합성, 피해자 개인정보와 함께 유포 = 지인능욕
- 지인방, 겹지인방 등을 텔레그램에서 운영
- 텔레그램 딥페이크 포르노 대량제작 사태 (권김현영)

  "딥페이크 라는 기술을 이용해 여성 신체 이미지를 '포르노'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특이점임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 미성년 대상의 포르노 제작, 유포, 소지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음."

'지인능욕'이라는 온라인 젠더폭력

여기 범죄라고 거의 인식되지도 않는 범죄가 있다. 터무니없이 잘못 붙은 이름으로, '지인능욕'이라고 불린다. 이 범죄 가해자들은 **자기가 아는 여성의 얼굴을 음란 사진 등에 합성해 돌려 본다.** 대상이 된 **여성에게 합성 사진을 보내고 충격 받는 반응을 즐기기도 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자의식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이건 '지인'을 '능욕'하는 유희다. '지인능욕'은 이 가해자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름이다.

'지인능욕'은 대비하고 싶어도 대비할 방법이 없다. 누가 피해자가 될지는, 온전히 가해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누구나 아주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지인능욕'은 신체에 직접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오직 피해자의 존엄만을 파괴한다. 이 피해는 크고 심각하며 고통스럽다. 하지만 형사사법체제는 신체에 끼친 피해를 다루는 데 맞춰져 있다. '지인능욕'은, 범죄가 피해자에게 남기는 상처의 크기와 어울리지 않게, 사실상 경범죄로 취급받는다.

1)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2)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범죄가 3) 형사사법적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지인능욕'은 성범죄 중에서도 아주 독특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원은지, 천관율 '나 잡으려고 텔레그램 가입했어?', 얼룩소, 2024. 5. 20.

파이낸셜뉴스

사회 > 사회일반

"지인 얼굴에 야한사진 합성".. SNS서 파렴치 범죄 기승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8 17:28 수정 2016.09.08 17:28

가 가

연예인.미성년자까지 대상.. 알몸사진 찍은 것처럼 포장

피해자 정신적 충격 심해.. 전문가 "처벌 강화 필요"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8 17:28 수정 2016.09.08 17:28

합성황제

고퀄리티

문의 DM

팔로우

합성황제

영상해주실분 교환, 문상거래

사진과 함께 dm주세요

합성인

DM 환영 / 팔로우 환영

지인합성,이미지 합성,문서위조 등등

지인 합성

팔로우

합성해드림!! 지인,여친 ...

팔로우

,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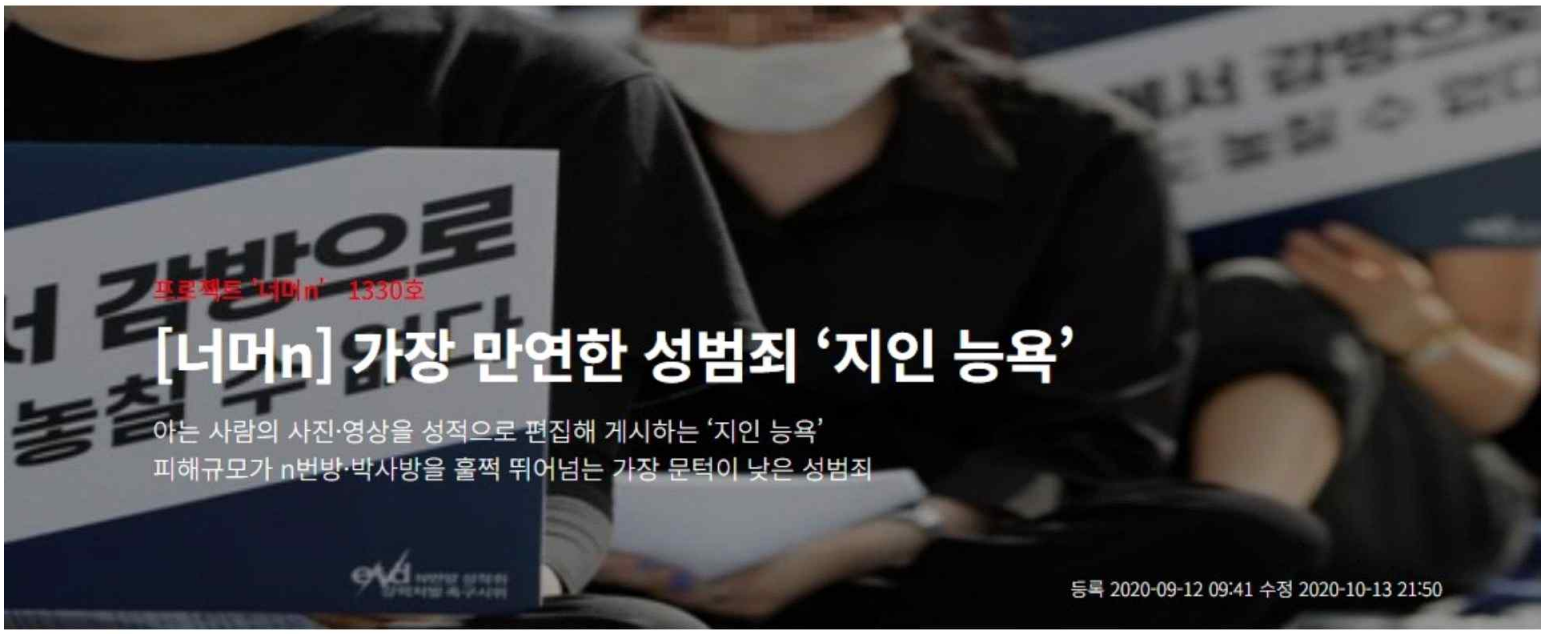

프로젝트 '너머n' 1330호

[너머n] 가장 만연한 성범죄 '지인 능욕'

아는 사람의 사진·영상을 성적으로 편집해 게시하는 '지인 능욕'

피해규모가 n번방·박사방을 훌쩍 뛰어넘는 가장 문턱이 낮은 성범죄

등록 2020-09-12 09:41 수정 2020-10-13 21:50

소라넷, 웹하드카르텔, 버닝썬, 웰컴투비디오, 텔레그램 성착취

= 여성폭력의 시장/산업화

성착취물 제작자 - 유포·소지자 - 시청·소비자
수익을 창출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김린아, 조율 기자 “텔레그램, 광고수익 50% 배분…성착취 딥페이크 폭증”, 문화일보, 2024. 8. 29
김민석 기자, “텔레그램, 어쩌다 딥페이크 소굴됐나…”1000명 모이면 돈 줬다”, 뉴스1, 2024. 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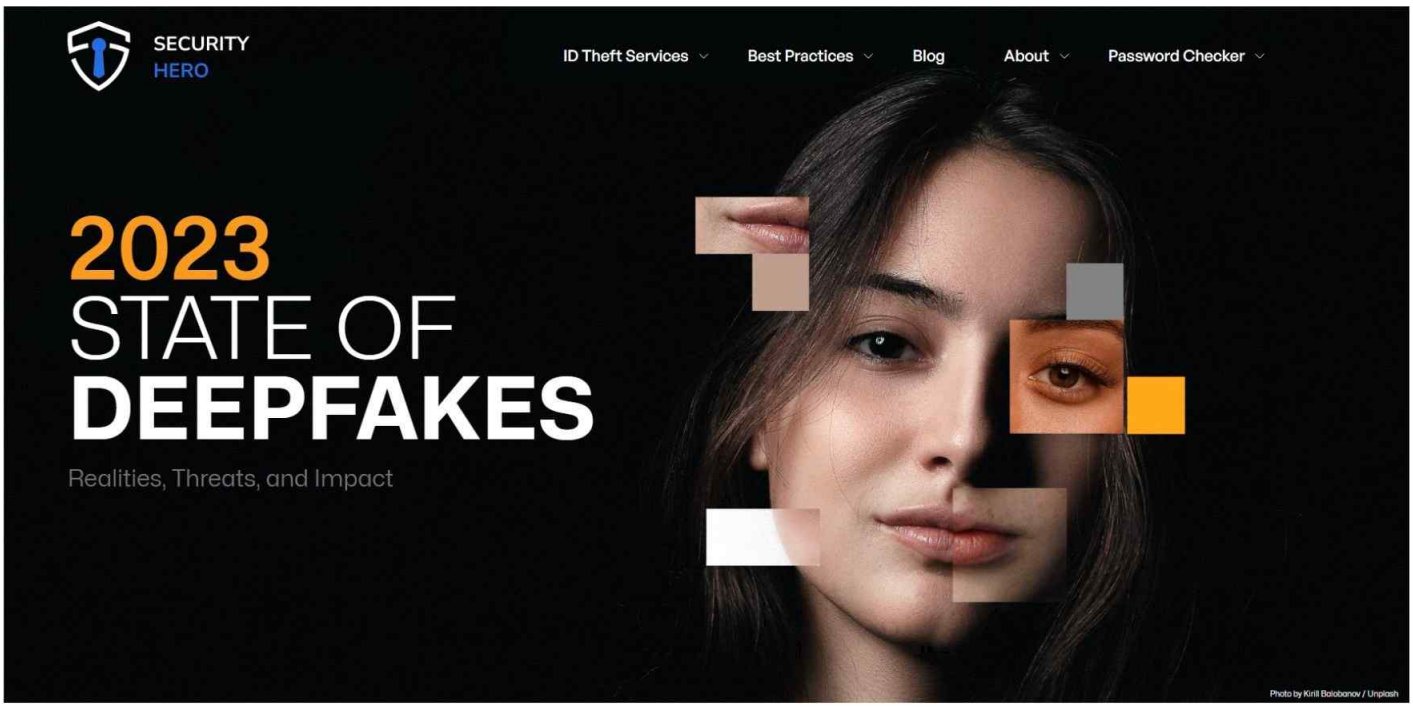

KEY FINDINGS

01. The total number of deepfake videos online in 2023 is **95,820**, representing a **550%** increase over 2019.

02. Deepfake pornography makes up **98%** of all deepfake videos online.

03. **99%** of the individuals targeted in deepfake pornography are women.

04. South Korean singers and actresses constitute **53%** of the individuals featured in deepfake pornography and are the most commonly targeted group.

05. **94%** of those featured in deepfake pornography videos work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06. **One in every three** deepfake tools allow users to create deepfake pornography.

07. It now takes less than **25 minutes** and costs **$0** to create a 60-second deepfake pornographic video of anyone using just one clear face image.

08. **48%** of surveyed US men have seen deepfake pornography at least once.

09. **74%** of deepfake pornography users don't feel guilty about it.

주요 결과

01. 2023년 온라인 딥페이크 동영상의 총 수는 **95,820개**로, 2019년 대비 **550%** 증가했습니다.

02. 딥페이크 포르노는 온라인 전체 딥페이크 동영상의 **98%**를 차지합니다.

03. 딥페이크 포르노의 표적이 된 개인의 **99%**는 여성입니다.

04. 한국 가수와 여배우는 딥페이크 포르노에 등장하는 개인의 **53%**를 차지하며 가장 일반적으로 표적이 되는 그룹입니다.

05. 딥페이크 포르노 동영상에 등장하는 콘텐츠의 **94%**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6. 딥페이크 도구 **3개** 중 **1개**를 사용하면 딥페이크 포르노를 만들 수 있습니다.

07. 이제 선명한 얼굴 이미지 하나만 사용하는 사람의 60초 딥페이크 포르노 동영상을 만드는 데 **25분**도 채 걸리지 않으며 **비용도** 0달러입니다.

08.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국 남성의 **48%**는 딥페이크 포르노를 한 번 이상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9. 딥페이크 포르노 사용자의 **74%**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회 사회일반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의자 318명 중 79%는 10대...63명은 촉법소년

기자 이지혜

수정 2024-09-11 20:50 등록 2024-09-11 15:0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1:41

점점 더 내려가는 피/가해자 연령

시사IN 로그인

김진경의 평범한 이웃, 유럽

2초 만의 성범죄, 딥페이크가 '엔데믹'이 된 이유 [평범한 이웃, 유럽]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청소년이 겪는 폭력의 양상이 복잡해졌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성범죄가 대표적이다.

시사IN 취리히·김진경 (자유기고가) 다른기사 보기 >

입력 2023.12.17 08:45 호수 847

엔데믹 = 일상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는
무엇을 할 것 인가 / 할 수 있나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인식개선	연구/연대활동
• 법률지원 • 심리,신앙 상담 • 공동체내 해결과정지원 • 그외 회복과정지원 (자조모임, 샬롬예배 등)	• 교단총회 모니터링 • 교단 내 성폭력 정책 제안 • 교단, 교회 간담회 • 교회내 성범죄 경력조회 운동	• 교육영상 제작 • 찾아가는 교육 성폭력 예방, 성인지감수성 등 • 포럼, 좌담회	• 성폭력 예방 매뉴얼 발간 • 예방교육 커리큘럼 발간 • 예방교육 표준교육안 발간 • 성인지감수성 여론조사 • 반성폭력,성평등 연대 활동 • 서포터즈

극우개신교 반페미니즘 운동, 포괄적 성교육 반대운동으로 인한
공공도서관 성교육, 페미니즘 도서 폐기 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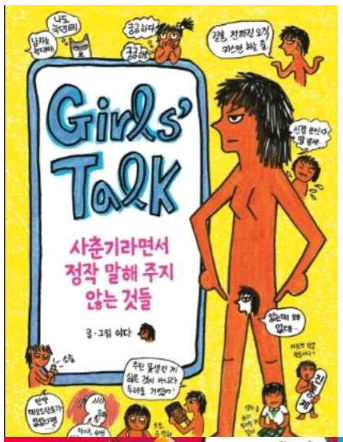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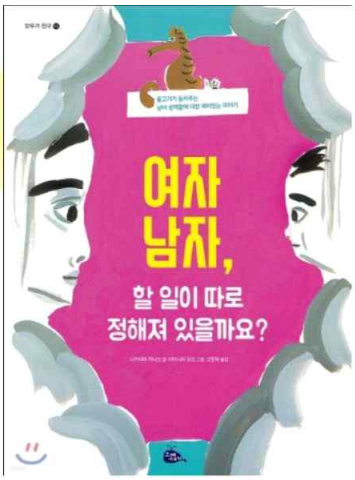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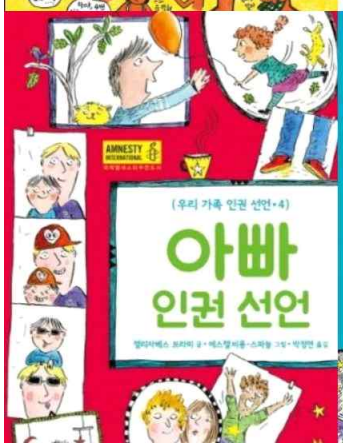

2020년 나다움 어린이책 회수사건 이후
2024년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에서 **2,528**권의
성평등·성교육·페미니즘 관련 도서가 폐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포괄적 성교육이란 / 유네스코 국제성교육 가이드

핵심개념 1

나와 교회 그리고 관계

창 1:27, 갈 3:28, 행 17:28, 고전 13:4–6, 잠 4:23, 전 4:9–10, 눅 6:31, 삼하 12:7–10

핵심내용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이다.

주제 1 기독교적 인간 이해

지식_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태도_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

태도_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기술_ 서로를 존중하는 인격적인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핵심내용

관계의 종류는 다양하며, 건강한 관계를 위해 서로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

주제 2 관계와 경계

지식_ 다양한 관계를 알 수 있다.

태도_ 다양한 관계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다.

태도_ 다양한 관계 속의 경계를 인정할 수 있다.

기술_ 다양한 관계 안에서 경계를 침범하는 기준과 사례를 구분할 수 있다.

핵심내용

관계 속에서의 위치와 역할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주제 3 관계 속에서의 위치와 역할

지식_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을 알 수 있다.

태도_ 개인이 가진 특권과 취약점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수 있다.(예: 성, 연령, 학력, 직업, 장애, 지역, 경제능력 등)

기술_ 상호간의 특권과 취약점을 인식하여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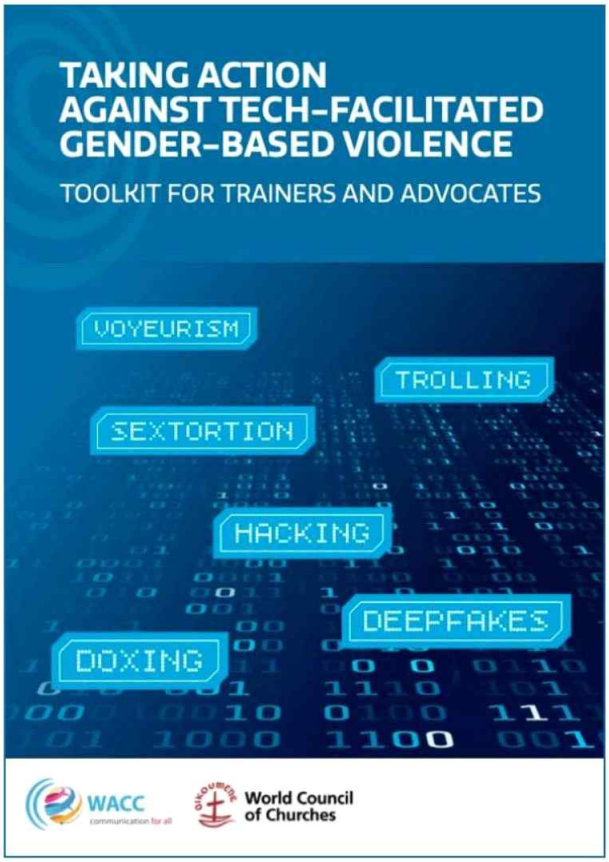

WACC와 WCC 공동 제작

The World Association for Christian Communication (WACC) is a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that builds on communication rights in order to promote social justice.

한국교회를 향한 제언

성폭력 예방을 넘어 성평등 교육 의무화

개교회 미디어 /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활성화

‘성평등’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교회법 개정운동

교회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

나눔과 제언(3)- 딥페이크 사건을 통해 보는 한국교회의 역할

이성철 간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가 일으킨 극심한 사회 전환을 맞이했다. 적응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며 나타난 한국사회는 모순적이게 무수히 많은 고통의 현실을 만들어 냈다. 한국교회는 변화 속 승자들이었고 가장 중요한 추동자에 속했다. 발빠르게 사회와 맞춰 발전과 후퇴를 했다. 그렇게 오늘날 한국사회가 지닌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집약되어 있다.

교회의 신앙은 오랫동안 '장벽'을 쌓으면서 발전해온 역사를 갖고있다. 장벽은 타자와 우리를 구별하는 무수한 장치들을 통해서 작동된다. 많은 교회와 성직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구별짓기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낡은 신앙의 고수 및 강화의 현상이 한국사회의 극우주의와 결합되곤 한다. 적을 지목하고 배척하며 공격하는 태도는 극우주의와 닮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와 교회를 배경으로 청소년·청년 사이에서는 뉴라이트의 현상의 하나인 '온라인 극우'가 자라고 있었다. 일부는 교회 밖에서, 또 일부는 교회 안에서 극우주의적 혐오에 빠져들고 있다. 혐오의 정치와 극우주의가 위험스럽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 교회의 관행에 대한 비판적 점검이 시급하다.

2020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에서 실행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중 "온라인상의 성매매와 성폭력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매매와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성매매와 성폭력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들보다 더 심각하다는 데에 56.6%가 공감하고 있다. "온라인성폭력 및 음란물 배포같은 성 착취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대면하는 범죄와 달리 죄책감에 둔감"하다는 답변이 46.9%로 가장 많다. 순위 합산으로 살펴본 개신교인의 인식 지형은 20-30대 젊은 세대일수록 죄책감 둔화와 온라인 매체 특성이 갖는 비대면과 익명성을 높게 지적한 반면, 직분이 높고 신앙 정도가 높을수록 죄책감 문제와 인간을 성적 도구로 인식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자행되는 성폭력과 성착취의 심각성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앙이 깊고 직분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기독교적 인간 이해의 관점에서 인간의 성적 도구화, 비인간화가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를 통해 연령, 온라인 매체 이해도, 기독교적 인간 이해 등에 따라 응답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교회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 온라인상의 성폭력과 성매매가 쉽게 접근 가능하고 일상화하는 경향은 단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매체만의 변화는 아니다. 손쉽게 성폭력범죄에 가담하면서도 죄책감이나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윤리적 근거와 가치가 부재한 현 사회와 교회의 문제이다. 교회 내의 성인지 감수성은 뒤처져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위계적 권위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여성의 비인간화와 대상화가 자본주의와 맞물려 온라인에서 급속하게 소비되는 문화도 심대한 문제이지만 남성 집단의 문화가 집단 범죄와 연계 및 확산되는 것도 심대한 상황이다. 대부분

고연령층의 특정 성별인들이 현재 한국교회 내의 대표성을 목소리를 독점하는 대의구조는 교회를 안전한 공동체로 만드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정의 평화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1974년 시작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의 인권위원회를 이어가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들을 이어가고 있다. 인권센터의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다.

- 인권과 평화에 대한 교육
- 인권에 대한 성서 신학적 연구
- 인권상담 및 대책 활동
- 국내외 인권 관련 정보교류 및 연구
- 한반도 평화와 인권에 대한 활동
-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연대
- 기타 인권운동에 관한 사업

한국교회 인권선교를 위해, 사회적 아픔 속에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인권운동의 방향성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는 ‘한국교회 인권정책협의회’를 진행해왔다. 시급한 인권 현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도회와 토론회 등을 진행해 왔으며, 사회의 인권의 언어와 이슈들을 교회에 녹여내고자 신앙의 언어로 전달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NCCK인권센터는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즈음하여 '인권주간'을 제정하고 '인권주간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987년부터는 'NCCK인권상'을 시상해 왔다. 'NCCK인권상'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있는 인권상으로써 지난 37년간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과 민주발전, 평등과 평화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에 수여하고 있다. 1987년, 제1회 수상자로 '박종철 물고문사건 진상규명'에 기여한 오연상 님을 선정하였다. 지난 2018년, 검찰의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하여 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을 촉발시키며 우리 시대가 직면한 차별과 폭력, 잘못된 성인습의 틀을 깨는 사회적 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서지현 검사에게 한국교회 인권상을 시상했다. 서지현 검사에게 인권상을 수여하는 것은 자신의 아픔을 사회에 폭로하고 있는 미투운동 피해자들의 용기와 결단에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지지와 연대를 표하는 것이었고, 직장 내 '갑질문화'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을 해소하는 일에 적극적인 연대가 될 것을 기대하며, 성에 대해 폐쇄적이었던 교회 내 성(gender) 문제를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데에 계기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이러한 사명의 구체적인 실현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서도 드러나야 하며 이 시대 교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을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을 제도화하고 문화를 바꾸는 일에 한국교회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

MEMO

MEMO

<참고자료> 교회협 여성위원회의 교회성폭력 예방 활동기

1. 1999년 6월 21일, “교회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한국교회에 보내는 건의문” 발표 (서울여성의 전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2. 기독여성단위의 ‘교회 내 성폭력문제 대책 실무자 회의’: 2001년 3월 26일(월)
3. 기독여성단위가 모여 ‘교회 내 성폭력 추방 공동대책위원회’ 조직
   - 1차 회의: 2001년 4월 6일(금)
   - 2차 회의: 2002년 2월 6일(수) 오후 4시, 한교여연「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지침서」마련을 위한 초안 검토
   - 3차 회의(전문위원 모임): 2002년 3월 7일(수) 오후 4시, 여신협
4. 2001 기독여성운동정책협의회(‘성폭력 추방을 위한 기독여성의 역할’) 개최: 2001년 5월 17일(목)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5. 2002 기독여성운동정책협의회(성폭력극복과 예방을 위한 교회선언에 대하여): 2002년 5월 2일(금)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6. 교회협 제51회 정기총회(2002.11.18.))시, “성폭력 극복과 예방을 위한 교회선언” 채택함.
7. 2015년 한국교회여남평등주간(12.06-12), “여성이 보는 국가폭력” 자료집 발간
8. 제64-5차 여성위원회(2016.09.21.) 회의 시, 한국교회 기독여성들이 교회 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재가동 협의를 함.
9. 제65-1차 여성위원회(2016.11.22.) 회의 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홍보연 위원을 추천/ 한교여연과 여신협 협력 요청)
10. 2016년 한국교회여남평등주간(12.04-10), “성폭력과 힘의 악용” 자료집 발간
11. 여성위원회 내 교회내성폭력대책소위원회 활동
    - 1차 회의(2017.05.22., 한교여연 사무실): 조직 구성((소위원장 홍보연 목사/ 여성위원장 민숙희 사제, 여신협 사무총장 이은주 목사, 여신협 부설 기독여성상담소 소장 채수지 목사, 한교여연 총무 신미숙 목사, NCCK 부장 황보현 목사), 사업 논의(「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2003년 초판, 여신협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의 개정증보 및 앱 활용 등)
    - 2차 회의(2017.06.08., 서대문 맑은샘교회): 개정판의 내용 점검, 전문 및 감수위원 추천(최순양 박사, 정희성 박사)
    - 3차 회의(2017.07.04., 한교여연 사무실): 원고 주제와 집필진 선정, 교회개혁실천연대 최근 정보자료 요청.
    - 4차 회의(2017.08.22., 서대문 맑은샘교회): 개정판 원고 순서 및 내용 정리
    - 5차 회의(2017.09.22., 한교여연 사무실): 지침서 내용 추가 협의, 추후 토론회 개최 협의 등
    - 6차 회의(2017.10.24., 이대ECC B4층 Dr. Robbins): 지침서 목차 검토, 출판일정 협의 등)
    - 제66-2차 여성위원회(2018.01.31.) 시,「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지침서」개정증보판을 여신협에서 자체 제작하기로 함에 따라 교회내성폭력대책소위원회를 해소 및 사업을 중지하기로 함.
12. 2018 부활절맞이 ‘차별과 혐오 피해자를 기억하는 기도회’ 및 선언문 발표 (교회안팎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2018년 3월 22일(목)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13. 교회성폭력 피해자와의 간담회 개최: 2018년 3월 29일(목) 오후 2시, 기독교여성상담소(서대문

CI빌딩 405호)

14. 교회 성폭력에 대한 입장문 발표: 2018년 4월 3일(화)/ S교회 J목사의 성폭행을 규탄하며
15. 교회성폭력 피해자 면담: 2018년 4월 23일(월) 오후 2시, 기독교회관 708호
16. 교회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8월 24일(금) 오후 1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17. 2018년 한국교회여남평등주간 “교회 성폭력, 이제 그만” 자료집 발간(2018.12.09.-15) 및 WCC, 검은목요일 캠페인(Thursdays in Black) 참여
18. “교회성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목소리” 리플렛 제작 및 배포: NCCK 제68회기 총회 (2019.11.18.)
19. 2019년 한국교회여남평등주간(12.08-14), 소중한 ‘나와 너’를 찾아가는 예배(2019.12.02. 오후 4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및 예배문 배포
20. 제68-3차 여성위원회(2020.06.24.) 시, 교회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회원교회 내 담당자, 상담가와 논의를 협의함.
    - 교회성폭력대책 활동을 위한 1차 회의(2020.08.20. 오후3시30분, 줌): 교회성폭력 대응 매뉴얼 원고 작성 내용 틀, 제작 관련 의견 수렴, 과정 보고 등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최선혜 소장 미팅: 2020년 8월 28일(금), 한국여성의전화
21. 제68-4차 여성위원회(2020.10.07.) 시, 교회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재개할 것을 제안함. 제69-2차 여성위원회(2021.02.25.) 시, “교회성폭력 극복과 예방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함.(위원장 최소영 목사, 임정혁 위원, 노경신 위원, 홍보연 위원, 강하니 위원, 전수희 위원/ 황보현 부장)
    - 「교회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한 매뉴얼 그리고 자료집」 발간을 위해 상시 위원회 활동함.
    - 2021년 4월, 「교회성폭력예방과 극복을 위한 매뉴얼 그리고 자료집」 책 발간함.
    - 교회협 제69-3차 정기실행위원회(2021.7.21.) 시 책을 교회협 공식 문서로 채택함.

「교회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한 매뉴얼 그리고 자료집」(2021)

〈목 차〉

발간사

Chapter 1. 성폭력과 교회성폭력에 대한 이해

1. 성폭력이란
   1)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
   2) 성폭력 유형과 범주
2. 교회성폭력이란
   1) 교회성폭력의 정의
   2) 교회성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
   3) 교회성폭력의 특수성
   4) 교회성폭력의 유형

Chapter 2. 교회성폭력 예방과 사건 대처 매뉴얼

1. 교회성폭력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2. 교회성희롱 근절과 예방을 위한 지침
   1) 예방안
   2) 교회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3) 교회성희롱 가해지목인(행위자)의 처리

3. 교회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지침
   1) 교단(교회)과 지역교회를 위한 지침
   2) 목회자를 위한 지침
   3) 교인들을 위한 지침
   4) 가해자를 위한 지침
   5) 사회적/교육적인 토대 마련을 위한 지침
4. 교회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 합의 가능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2) 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처리 절차
5. 교회성폭력 대상자에 따른 매뉴얼
   1) 가해자 매뉴얼
   2) 가해자 주변인 매뉴얼
   3) 피해자 매뉴얼
   4) 교회/단체 공동체 매뉴얼
6. 교회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
   1) 일반적 지원
   2) 목양적 지원
   3) 의료적 지원
   4) 법률적 지원

Chapter 3. 교회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회의 응답

1. 교회협 회원교회의 응답
2. 기독여성의 활동
   1) 교회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한국교회에 보내는 건의문(1999)
   2) 성폭력 극복과 예방을 위한 교회 선언(2002)
   3) 교회성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의 기도(2016)
   4) 예배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회공동체”(2020 교회여남평등주간)
3. 세계교회의 동향

Chapter 4. 주요 자료

1.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2. 성폭력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3. 관련 사회법령
4. 관련 법률용어
5. 도움의 손길
   1) 교회 분야
   2) 학교 분야
   3) 상담 및 지원
6. 주요 참고문헌

22. 교회협 여성위원회 “교회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한 회원교회 순회간담회” 진행 (현재 진행 중)
    - 1차 간담회(구세군): 2021년 9월 7일(화) 오후 2시-3시 30분, 구세군대한본영 17층 채플실
    - 2차 간담회(성공회): 2021년 11월 9일(화) 오후 2시-4시, 대한성공회 의장주교실
    - 3차 간담회(기감): 2022년 6월 23일(목) 오후 2시-3시 10분, 감리회본부 16층 감독회장실
    - 4차 간담회(복음): 2023년 7월 18일(화) 오후 2시 30분-4시, 서울복음교회 1층 소예배실
23. 교회협 제71회기 정기총회(2022.11.21.) 시,「교회성폭력 예방교육 커리큘럼」소책자 발간 및 배

포함. (기독교반성폭력센터와 공동주관)

「교회성폭력 예방교육 커리큘럼」(2022)

〈목 차〉

발간사

Ⅰ. 커리큘럼

1. 핵심개념1: 나와 교회 그리고 관계
   주제1 기독교적 인간 이해
   주제2 관계와 경계
   주제3 관계 속에서의 위치와 역할
   핵심개념에 따른 성경본문
2. 핵심개념 2: 성(Sexuality)과 성문화
   주제1 성경에 나오는 성
   주제2 성(Sexuality) 인식에 영향을 주는 사회, 문화, 성경해석
   주제3 대중매체 정보 해독력(리터러시)과 성(Sexuality)
   주제4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권
   핵심개념에 따른 성경본문
3. 핵심개념3: 성역할 이해
   주제1 성별화 된 고정관념과 편견
   주제2 가부장제- 위계와 힘의 불균형
   주제3 일상에서의 성평등 사례 및 모델
   핵심개념에 따른 성경본문
4. 핵심개념 4: 성폭력과 안전
   주제1 성폭력
   주제2 동의와 비동의
   주제3 성폭력과 안전
   핵심개념에 따른 성경본문
5. 핵심개념 5: 교회성폭력과 교회공동체
   주제1 교회성폭력
   주제2 교회성폭력을 대하는 교회공동체의 역할
   주제3 교회공동체의 필수 과제
   주제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평등한 교회 되기
   핵심개념에 따른 성경본문

Ⅱ. 참고자료

1. 도움의 손길: 교회, 학교, 상담 및 지원 분야
2. WCC 제11차 총회 준비: 여성주의 시각에서 드리는 에큐메니칼 예배문

24. 교회성폭력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연구소위원회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공동주관)
    - 1차 회의(2023.03.02. 오후 2시, 교회협 회의실): 표준강의안 기획 협의, 예산안 협의, 표준강의안 작성안 및 집필진 협의, 차기 회의 일정 협의 등
    - 2차 회의(2023.03.20. 오후 3시 30분, 교회협 회의실): 기획 및 예산안 재협의, 교회성폭력예방교육 개요(강의계획서) 검토, 연구소위원회 조직, 차기 회의 일정 협의 등
    - 3차 회의(2023.04.24. 오전 11시, 교회협 회의실): 강의안 검토 및 연구위원 역할 협의
    - 4차 회의(2023.05.11. 오후 2시, 교회협 회의실): 강의안 검토(1. 성인지관점으로 보는 교회성폭력)

- 5차 회의(2023.05.22. 오후 3시, 교회협 회의실): 강의안 검토(2. 평등하고 안전한 교회공동체를 만드는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 되기)
- 6차 회의(2023.06.08. 오후 2시, 교회협 회의실): 강의안 검토(3.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안전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향해)
- 7차 회의(2023.06.19. 오후 2시, 교회협 회의실): 강의안 검토(4. 경계와 성평등한 교회문화)
- 8차 회의-11차 회의(2023.07.03./ 2023.07.21./ 2023.07.26./ 2023.10.31.)
- 실무자 회의(강의안 문안 및 디자인 검토): 2023.08.04./ 2023.08.10./ 2023.08.11./ 2023.08.25./ 2023.09.06.
- 자문/감수 위원 소통
- 상시 단톡방 및 온라인회의를 진행함.

25. 2023년 12월 10일, 「교회성폭력 예방교육 강의매뉴얼」 제작, 발간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공동주관)

「교회성폭력 예방교육 강의매뉴얼」(2023)

〈목 차〉

발간사
1. 성인지 관점으로 보는 교회성폭력
2.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 되기
3. 경계와 성평등한 교회 문화
4.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안전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향해
5. 안전한 교회를 위한 워크숍
부록

26. 2024년 9월, 교회성폭력 예방교육 영상 강의 3편 제작 및 배포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회원교회 주무부서와 공동주관)

* 원고는 교회협 문서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독여성운동 30년사」(2014), 그리고 관련 회기의 총회보고서와 회의록 등을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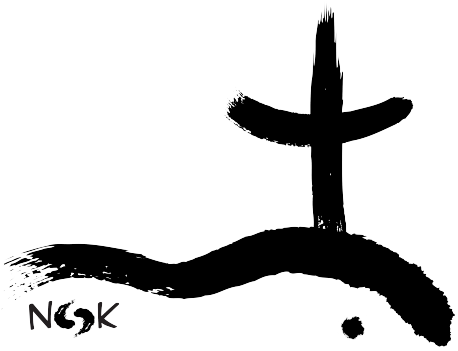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 성 위 원 회
정 의 · 평 화 위 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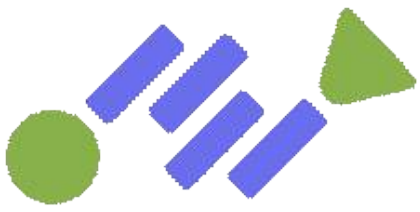

기독교반성폭력센터